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1-					
소관부서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조치방법	금액(천원)	
○○○○처 (○○○○부)	2021년	부서주의, 시공사 및 감리단 주의 시정	-	-	-

## 【제 목】 건축 시공 및 현장관리 소홀

### □ 업무 개요

○○○○처 ○○○○부(이하 “○○○○부” 라 한다)는 “○○○○○○○○○○원 청사신축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2018. △. △△. 주식회사 ○○○○ 외 4개 업체<sup>1)</sup>(이하 “시공사” 라 한다)와 계약을 맺고 2018. △. △△. 착공하여 2020. △. △. 총금액 △△,△△△백만으로 공사 준공하였다.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동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원 청사신축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으로 2018. △. △△. (주)○○ 건축사사무소 외 1개 업체<sup>2)</sup>(이하 “건설사업관리단” 이라 한다)와 계약을 맺고 2018. △. △△. 용역을 착수하여 2020. △. △△. 총금액 △,△△△백만원으로 준공하였다.

### □ 관련법령 및 지적내용

#### 가. 준공도면 관리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및 건설사업관리단이 제출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sup>3)</sup>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사계약상대방 : (주)○○○○(51%), ○○○○○○(주)(29%), ○○○○(주)(20%), (주)○○○○○○○○(100%)

2) 용역계약상대방 : (주)○○건축사사무소, (주)○○○○건축사사무소

3)

그러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험동과 부대동 사이에 기울어져 시공된 4층 바닥 철골빔에 대하여 준공 구조설계서 상에는 일직선으로 표현되어 있고, 준공 건축도면에서는 해당 부분이 미기재 되어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시공사 역시 준공도면을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 있다.

#### 나. 옥상 목재데크 실정보고 관련 검토 소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및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sup>4)</sup>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현장 조건의 부합 여부 등 설계를 적절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은 옥상 목재데크 실정보고 관련하여 설계 검토 시 옥상의 경우 직사광선 등 기후변화에 취약 지역인 것을 고려해야 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 1층 북쪽 목재데크 설계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재 이외의 다른 재료에 대한 비교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구간에서 수축·팽창 및 처짐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부보강재를 보강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 다. 기타 하자 지적사항 관련

기타 하자 지적사항의 경우 일반적인 하자로 적기에 하자보수공사 시행하면 되기는 하나, 수탁사업부,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이 시공 및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였다면 하자를 더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제104조(준공검사 등의 절차)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2018.07.16. 제출) >

제1장 총칙, 1-6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 **청렴시민감사관 의견**(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구조기술자 ○○○)

4층 바닥 철골빔 수평 불일치는 구조 및 안전상에 문제는 없으며, 옥상정원 데크는 4계절의 극심한 기후변화·물빠짐·목재 특성상 데크의 처침 및 변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기타 보수사항의 경우는 간단한 보수로도 기능 확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관련자 및 감사자 의견**

○○○○는 ○○○○○○○○○원 청사신축 공사과정에서 시공상태 자문을 위해 경기도건설기술심의(道시공검수), 관련규정에 의한 예비준공검사,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해빙기 점검, 고객만족을 위한 수요처 입주전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여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준공 이후에도 수시로 하자점검 및 관리를 하여 신속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함.

○○○ 도의원 현장 지적사항 관련해서 옥상 목재데크 변형 및 철골빔 수평 불일치 부분은 조치계획 수립 후 ‘21.1.25.까지 조치 예정이며, 기타 하자 지적사항은 ‘20.12.4. ~ 12.24.까지 보수 조치하였다고 함.

그리고 ○○○○○○○원에 시설물 인계인수(‘20.09.29.)는 되었으나 향후에도 ○○○○부는 하자점검, 관리 등 연구원의 하자관리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신속한 하자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부에서 하자 관리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 것은 사실이기는 하나, 준공도면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옥상데크 실정보고 검토를 소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시공 및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였다면 하자를 더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조치할 사항**

○ ○○○○부 “주의” 조치

사업 총괄업무를 소홀히 한 ○○○○부에 대해 “주의” 조치하오니 향후 관련 법령 및 公社 규정에 따라 시공 및 현장관리 총괄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기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 “ 주의 ” 조치**

또한 시공 및 현장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시공사 (주)화성개발 및 건설사업관리단 (주)○○에 대해 公社 관련규정에 따라 “주의” 조치하오니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도면 수정 및 하자보수 적기 시행 조치(시정)**

철골빔 관련해서 시공과 준공 건축도면이 일치될 수 있도록 수정 조치하고, 옥상 목재데크는 시공 상태를 면밀히 조사·확인하여 문제점 검토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 수립 후 하자 보수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제81조(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2018.07.16. 제출) >

제1장 총칙, 1-6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

1. (1) 시공계획의 검토 (3)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지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확인 (9)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